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5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2일

발 의 자: 윤영희, 강석주, 고광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봉준, 이상욱, 이소라, 이영실, 이종태, 이효원,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52명)

1. 제안이유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 이처럼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지원 사업)에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10조제3항제11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10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5의2. (생략)</p> <p><u><신 설></u></p> <p>6. ~ 11.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② (생략)</p> <p>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10. (생략)</p> <p><u><신 설></u></p> <p>11. (생략)</p> <p>④ · ⑤ (생략)</p>	<p>제7조(지원 사업) ① ----- ----- ----- -----.</p> <p>1. ~ 5의2. (현행과 같음)</p> <p><u>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u></p> <p>6.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u></p> <p><u>12. (현행 제11호와 같음)</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30110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운영희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선동규 주무관

접수일 : 2023.01.10.

회신일 : 2023.01.13.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제7조(지원 사업),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 조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제3조제1항2호)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지원 사업),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을 추가함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법조항 시행일이 2024년 6월 11일이고 지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 및 기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선동규

☎ 02-2180-7953

e-mail : abasiclife@seoul.go.kr